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설명자료

관세청

목 차

CONTENTS

1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

2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

3 과세자료 확보 방안

4 질의응답

1-1. 가격신고 제도 개요

◎ 원칙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시점**에 **세관장**에게 **가격신고**를 하고, **과세가격 결정자료**(이하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

신고 종류	내 용	작성양식
가격신고(법§27①)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	**가격신고서**
납세신고(법§38①)	해당 물품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	수입신고서
수입신고(법§241①)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등에 관한 신고	

◎ 대상

'원칙적 신고, 예외적 생략'으로 **모든 수입물품**이 **신고 대상**이며 **신고 생략** 및 **신고 생략제외 물품** 규정(관세규칙 §2)

가격신고 (원칙) → **가격신고 생략** (예외): 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입 물품, ② 관세·내국세 미부과 물품, ③ 과세가격 미화 1만불 이하 물품 등 → **가격신고 생략 불가** (예외에서 제외): ① 가산금액이 있는 물품, ② 간접지급금액이 포함된 물품, ③ 1방법 제외 물품, ④ 잠정가격신고 물품 등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⑤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현황 및 문제점

대 상 과세가격 심사 대상의 고려 없이, 가격신고하는 모든 납세자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상 **개별기업보고서 등** 제출 의무(국세청) ▶ **매출액 1천억 초과 & 특수관계자간 거래액 500억원 초과 기업에 한정**

방 법 과세자료 기제출, 생성 주기 관계없이 수입시 반복 제출

※ **(사례)** A사는 로열티 계약 관련 수입 300차례 하면서 **동일 로열티 계약서** 30회 제출

자 료 다양한 무역거래·계약에도 불구, 제출 자료를 추상적으로 규정*

* 〔**시행령 제15조**〕 송품장, 계약서, 각종 비용 증빙자료, 기타 가격 입증자료

꼭 필요한 기업만!

꼭 필요한 자료만!

일년에 꼭 한번만!

1-2. 제도 개편의 필요성

4단계 납부세액 신고 오류 관리 방안

STEP. 01
정확한 가격신고
성실한 자료제출

→

STEP. 02
납세신고
도움정보

→

STEP. 03
세액심사

→

STEP. 04
관세조사

과세자료를 활용한 효율적인 과세가격 위험분석 및 사후 심사 수행

① 효과적 신고 오류 안내로 납세자의 사후추징 위험 경감,
② 정확한 세액심사·관세조사 대상 선정 및 신속한 점검 수행

납세자의 최초 수입신고 시점에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신고 수리 후 체계적인 세액탈루 관리 절차를 효과적으로 지원

1-3. 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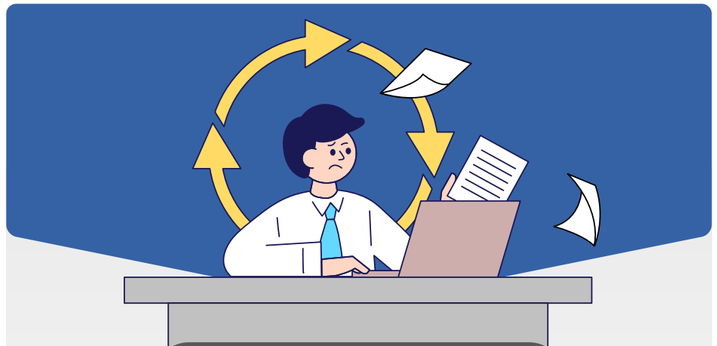


현행

모든 과세가격
신고인(납세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개편

성실한 납세자와
소규모 수입 납세자는
과세자료 제출 생략



현행

모든 과세가격 신고건에
대해 과세자료를
반복 제출

개편

1년에 한번만
제출
* 동일 조건 거래시



현행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과세자료 요구
(예시) 계약서, 증빙자료 등

개편

과세자료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안내
(예시) 상표권 계약서 및 상표권 사용료 지급 명세서

1-3. 제도 설명

납세신고 성실기업과 소규모 수입기업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 의무 생략

01 과세자료 제출 생략

- 납세협력 프로그램 (AEO, ACVA)
 - AEO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 ACVA :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 납부세액 연 5억원 미만



1-3. 제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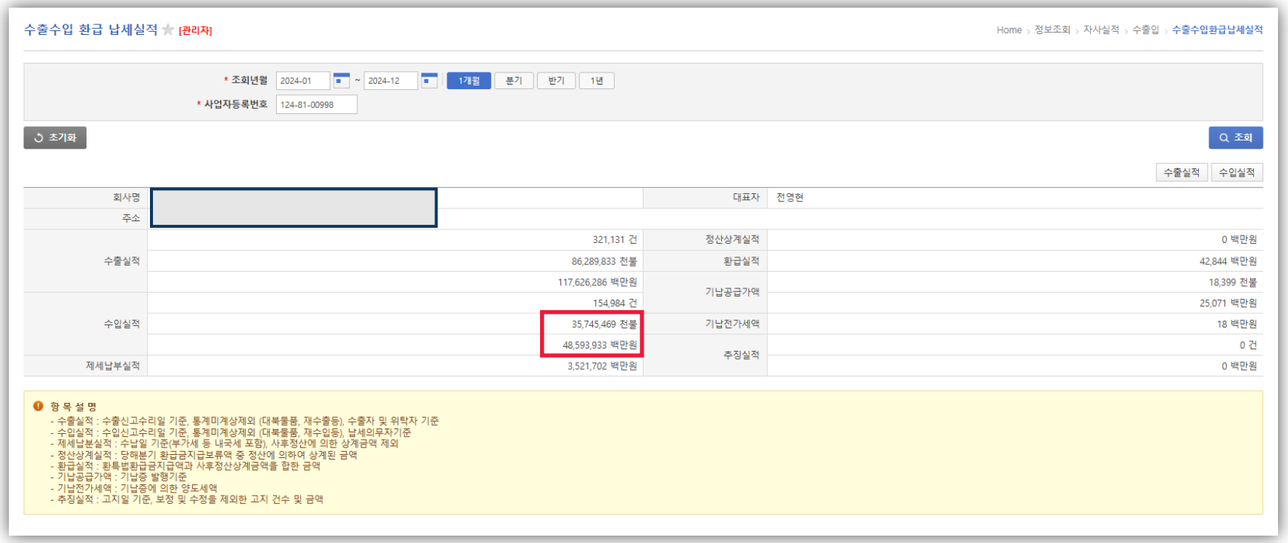
AEO

수입부분만 해당

ACVA

심사 및 결정 수입 품목만 해당

납부세액 확인



수출수입 환급 납세실적 ★ [관리자]

Home > 정보조회 > 자사실적 > 수출입 > 수출수입환급납세실적

* 조회년월 2024-01 ~ 2024-12 1개월 분기 반기 1년

* 사업자등록번호 124-81-00998

초기화 조회

수출실적 수입실적

회사명		대표자	전영현
주소			
수출실적	321,131 건	정산상계실적	0 백만원
	86,289,833 전불	환급실적	42,844 백만원
	117,626,286 백만원	기납공급가액	18,399 전불
	154,984 건		25,071 백만원
수입실적	35,745,469 전불	기납전가세액	18 백만원
	48,593,933 백만원	추징실적	0 건
제세납부실적	3,521,702 백만원		0 백만원

항목설명
- 수출실적 : 수출신고수리일 기준, 통계미계상제외 (대복물품, 재수출등), 수출자 및 위탁자 기준
- 수입실적 : 수입신고수리일 기준, 통계미계상제외 (대복물품, 재수입등), 납세의무자기준
- 제세납부실적 : 수납일 기준(부가세 등 내국세 포함), 사후정산에 의한 상계금액 제외
- 정산상계실적 : 당해분기 환급금지급보류액 중 정산에 의하여 상계된 금액
- 환급실적 : 환특법환급금지급액과 사후정산상계금액을 합한 금액
- 기납공급가액 : 기납증 발행기준
- 기납전가세액 : 기납증에 의한 양도세액
- 추징실적 : 고지일 기준, 보정 및 수정을 제외한 고지 건수 및 금액

☑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자사실적 ▶ 수출수입 환급 납세실적 ▶ '제세납부실적' 조회(직전연도 1년 조회)

1-3. 제도 설명

02 최초 수입 건만 과세자료 제출

-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연 1회 제출)



다른 품목이라도, 동일 과세자료 (계약서, 내역서 등)로 입증되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간주함

※ 같은 조건의 예시

1. 로열티

본사와의 단일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하는 의류, 신발, 가방류

2. 특수관계

동일한 TP(이전가격)보고서에 근거하고 다른 조정률이 적용되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3. 생산지원비

해외 생산자에게 무상 공급된 단일 용역으로 생산되어 수입되는 자동차 완제품 및 자동차 부품

1-3. 제도 설명

수입신고서 신고인 기재란

< 2025.9.1. ~ 2025.11.30. >

※ 신고인기재란

#####-25-000000M

가격신고서 기재란 신설

< 2025.12.1. ~ >

7. 과세가격결정자료가 첨부된 최초 수입신고번호

#####-25-000000M

유사 제도 ▶ 잠정가격신고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잠정가격신고) ① 납세의무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4조에서 정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가격신고서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계약에 따라 반복 수입하는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은 해당 계약에 따른 최초 잠정가격신고 건에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이후 잠정가격신고 건에는 수입신고서의 신고인 기재란에 최초 잠정가격신고 건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건별 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1-3. 제도 설명

03 과세자료 제출 목록 구체화

- 수입 거래 형태별, 과세 가격 결정자료 제출 대상 규정 → 8개분야



현행 규정 과세자료 (관세법시행령 제15조⑤)

01 송품장

02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03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가산요소)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나.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다음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간접지급)

1)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2)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3)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다.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납금액에 관한 계약서부고지서나 그 밖의 증빙자료를 말한다)(공제요소)

라.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1-3. 제도 설명

|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8개 분야)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제8호 >

※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 가격신고건의** 영 제15조제5항 제1호 **"송품장"**과 제2호 **"수입물품 구매계약서"**는 **필수 제출**

분야	과세가격결정자료(분야별 1개 이상)
권리사용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계약서
	로열티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생산지원	생산지원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생산 관련 물품 및 용역 산정 내역서 또는 공급 내역서
수수료	수수료·중개료 등 계약서
	수수료·중개료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운임·보험료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계약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용기·포장비용	해외포장용역계약서, 용기임대 계약서
	해외포장용역 및 용기임대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사후귀속이익	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과 관련된 계약서
	사후귀속이익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간접지급금액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 상계 금액 관련 자료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 관련 자료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관련 자료
	간접지급금액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특수관계자 거래	관세법상 수입물품 가격 결정자료
	수입물품 관련 이전가격 보고서 또는 설명 자료

1-3. 제도 설명

수입기업의 거래가 8개 분야에해당하지 않는다면?

< 미제출 사유, 작성예시 > ※ 판매자별 작성

예시1 당사는, 판매자 A로 부터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구, 게임기, 운동용구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입 거래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제8호의 8개 분야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예시2 당사는, 해외공급자 B로 부터 의류, 신발, 가방, 모자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고 해당 거래 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제8호의 '권리사용료'(상표권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입물품에 상표권 사용료 계약에 근거한 상표에 표시되어 관련성은 인정되나 수출자(생산자)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 즉, 구매선택권이 있는 거래로서 '거래조건'이 아니므로 가산요소 대상이 아님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지연 제출 사유서

납세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담당자 및 전화번호 (가격신고서 관련)	
	⑤ 주 소			
⑥ 대상 물품 (해외 판매자 및 HS 등)				
⑦ 미제출 사유 (무역거래 계약의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		※ 별표 제8호의 8개 분야 중 한 분야도 해당하지 않을 때 한함		
⑧ 지연 제출 사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최대 30일 이내 제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지연 제출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납세의무자 (서명 또는 인)

○ ○ 세관장 귀하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5항에 따라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미제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 제도 설명

04 과세자료 사후 제출 허용(30일)

- 기업의 과세자료 준비 기간 확보
 → 신속 통관 지원





< 지연제출 사유, 작성예시 > ※ 해외 거래처 단위로 작성

당사는, 판매자 C로 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격 신고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을 알려 드리며, 통관 후 30일이내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유 예시1: 해당 자료는 해외 본사로부터 수령예정이나, 본사 내부 승인 및 발급 절차로 인해 가격 신고일 기준 과세자료의 확보 불가
- 사유 예시2: 기존 로열티 계약 내용 일부 변경으로 현재 판매자 측과 계약 갱신 중이며, 최종 계약서 확정 본의 확보 후 제출 예정
- 사유 예시3: 수입물품 거래 가격과 관련한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회계정산이 마무리 되면 송금명세, 비용 내역서 등 제출 예정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지연 제출 사유서

납세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담당자 및 전화번호 (가격신고서 관련)	
	⑤ 주 소			
⑥ 대상 물품 (해외 판매자 및 HS 등)				
⑦ 미제출 사유 (무역거래 계약의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		※ 별표 제8호의 8개 분야 중 한 분야도 해당하지 않을 때 한함		
⑧ 지연 제출 사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최대 30일 이내 제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지연 제출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납세의무자 (서명 또는 인)

○ ○ 세관장 귀하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5항에 따라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미제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4. 가격 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대상 확인하기

<가격신고 대상>

Q1 수입 물품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가격신고생략 대상, 관세법 시행규칙 제2조②)

- ㅇ 정부 또는 지자체 수입 물품
- ㅇ 정부조달물품
- ㅇ 공공기간 수입 물품
- ㅇ 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않은 물품
- ㅇ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 ㅇ 수출용 원재료
- ㅇ 특정연구기관 수입 물품
- ㅇ 관세가격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개소세 등 부과 물품 제외)
- ㅇ 종량세 적용 물품
- ㅇ ACVA 결정 물품 (잠정가격신고 제외)

해당 없음

Q2 수입 물품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생략의 제외, 관세법 시행규칙 제2조③)

- ㅇ 가산요소가 있는 물품
- ㅇ 간접지급액이 있는 물품
- ㅇ 제2방법~제6방법 물품
- ㅇ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물품

해당함

해당 없음

1 가격신고 생략, 과세자료 제출 생략

Q3 수입 물품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자료제출 생략, 관세평가 고시 제4조)

- ㅇ ACVA 결정 물품
- ㅇ AEO(수입) 공인 업체의 수입 물품
- ㅇ 납세실적 5억원 이하인 자의 수입 물품

해당함

2 가격신고 대상, 과세자료 제출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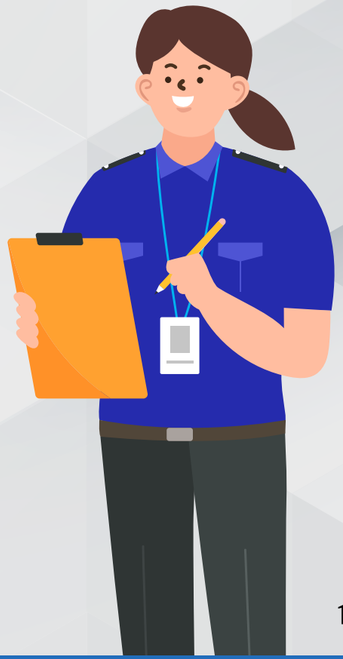
해당 없음

3 가격신고 대상, 과세자료 제출 대상

2.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

(1)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문항 삭제

현행	개선
■ 주관적 판단 문항	
7. �C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 □ 예 □ 아니요	< 삭 제 >
7. �D 거래가격이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비교가격에 근접합니까? (선택적 기재) / □ 예 □ 아니요	< 삭 제 >



2.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

(2) 특수관계자간 수입가격 결정방법 문항 신설

현행	개선	
< 신 설 >	8. ㈐ **[수입가격 결정방법]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국내판매가격**(표준판매가격·평균판매가격·순판매가격 등) × (1-할인율·재판매마진율) ② **국내판매가격**(표준판매가격·평균판매가격·순판매가격 등) - 목표매출이익 (- 운임·관세 등) ③ **제조원가**(표준원가·제3자구매가격 등) × (1+Mark up율) ④ **제조원가**(표준원가·제3자구매가격 등) × 계수 ⑤ 기타(상세 결정방법 입력) **(위 질문에 상세한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하시오.)**	**[① ~ ⑤ 택 1]**

2.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

(3) 과세자료가 첨부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신설

현행	개선
< 신 설 >	7. 과세자료가 첨부된 최초 수입신고번호 「 」



3. 과세자료 확보 방안

1. 단계적 대응조치 마련



* 20일 이상
기간 부여

* 20일 이상
기간 부여

* 월납 배제
* 담보제공 생략 중지

3. 과세자료 확보 방안

2.「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개정

① 자료제출 요구 분야 확대 규정

① 자료제출 요구 분야 확대 규정		훈령명 변경	
기 존	개 정	기 존	개 정
관세조사 분야	가격신고, 세액심사, 관세조사 분야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3. 과세자료 확보 방안

2.「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개정

① 자료제출 요구 분야 확대 규정

현행	개선
■ 관세조사 분야에 한정 제4조(**관세조사** 착수 시) 세관장은 관세조사 착수 시 제2조제항에 따른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조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절차는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 신 설 >**	■ 가격신고, 세액심사 분야 추가 제3조(**가격신고**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요구)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세액심사**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요구)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관세조사**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요구)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관세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과세자료 확보 방안

2.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개정

② 자료제출 요구 횟수 및 기간 명확화

② 자료제출 요구 횟수 및 기간 명확화

기 존	개 정
없음	2회 이상 제출 요구 및 각 20일 이상 제출 기간 부여



3. 과세자료 확보 방안

2.「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개정

② 자료제출 요구 횟수 및 기간 명확화

현행	개선
< 신 설 >	■ 2회 이상(각 20일 이상) 기회 부여 제8조(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의 원칙) ① (생략) ② 세관장은 자료제출 요구 대상자에게 **2회 이상**의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대상자에게 **충분한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이하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기간은 각 **20일 이상**으로 한다.

3. 과세자료 확보 방안

2.「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개정

③ 과세자료 미제출에 대한 대응 조치 신설

납세 제재		관세조사 제재	
기 존	개 정	기 존	개 정
월별납부 배제	**월별납부 배제, 담보제공 생략 중지**	관세조사 종결 시까지 과세자료 미제출 시	**가격신고 및 세액심사 관련 과세자료 미제출 시 비정기 관세조사 실시**

3. 과세자료 확보 방안

2.「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개정

③ 과세자료 미제출에 대한 대응 조치 신설

현행	개선
< 신 설 >	■ 담보제공 생략 중지 신설 제12조(담보제공 생략 중지) ① 세관장은 제7조의 과세자료를 등 제출 비협조 행위가 별표4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을 **중지** 할 수 있다.

현행	개선
< 신 설 >	■ 가격신고, 세액심사 시 자료 미제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신설 제13조(비정기 관세조사 선정) 세관장은 **자료 제출 대상자**가 세관장이 요구하는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관세조사 시 제출한 과세자료 등이 관세조사 종결 이후의 불복과정 등에서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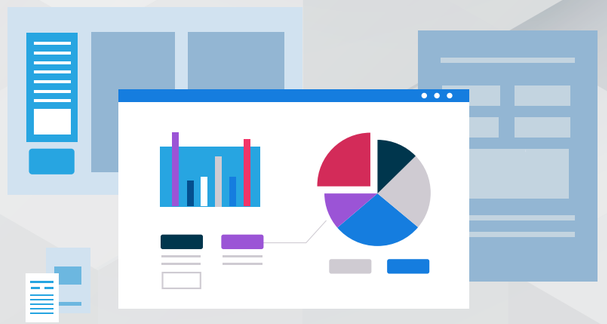
3. 과세자료 확보 방안

2.「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개정

④ 실효성 없는 기존 대응 조치 삭제

④ 실효성 없는 기존 대응 조치 삭제

기 존	개 정
서류제출대상 선별 및 검사율 상향 규정	삭제



3. 과세자료 확보 방안

2.「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개정

④ 실효성 없는 기존 대응 조치 삭제

현행	개선
■ 서류제출, 검사율 상향 규정 제12조(서류제출대상 선별) ①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을 요청해야 한다. 제13조(검사율 상향조정) ① 자료제출 비협조자가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검사율 상향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 삭 제 >